

의안번호	2220966
의 퇴 인	서천호 의원
회 답 일	2026.9.28.
추 계 번호	26G438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한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·소득세·부가가치세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총 1,354억원(연평균 22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·부가가치세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5년 연장(안 제67조)	-	-78	-91	-107	-125	-146	-547	-109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등 감면 5년 연장(안 제111조제1항)	-12	-12	-12	-12	-12	-	-58	-12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사용용역·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(안 제121조의25제7항·제8항)	-115	-130	-147	-167	-190	-	-749	-150
계	-126	-219	-250	-286	-326	-146	-1,354	-226

주: 각 항목의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존재하는 연도만 고려해 계산한 값임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67조 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-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,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등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2	안 제111조제1항 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-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3	안 제121조의25제7항·제8항 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	-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6년 12월 31일 (개정안) 2031년 12월 31일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7조 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	○	
2	안 제111조제1항 (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)	○	
3	안 제121조의25제7항·제8항 (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, 징수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추계
 - 소득세·법인세는 신고시기를 고려하여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해에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가정
 - 부가가치세·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등 소비세는 용역공급 또는 반출되는 연도에 세수효과가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

가.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조세지출실적을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추계
 - 법인세의 경우 감면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, 소득세 감면은 2026년 잠정치이 유지된다고 가정

나.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조세지출실적을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 추계
 - 감면실적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므로, 2022~2026년 감면 실적의 평균값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 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(개별소비세)의 부가세인 교육세 감소분까지 추계
 -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 감면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자가격의 부가가치세 변동 효과는 포함하지 않음

다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

- 「조세지출예산서」 상 최근 조세지출실적을 바탕으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추계
 -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2022~2026년 연평균 증가율(13.4%)에 따라 향후에도 감면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(안 제67조)

- (제도개요)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
 - (제1항) 영어조합법인의 소득 중 일정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
 - 법인세 면제 소득액 = 조합원수 × (어업소득 연 3천만원 + 이외소득 연 1,200만원)
 - (제2항)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은 연 1,200만원까지 소득세 면제
 - (제3항) 제2항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% 분리과세 특례
 - (제4항)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등을 영어조합법인·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% 감면
- (감면실적) 동 특례의 조세지출액은 2024년 39억원에서 2025년 52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6년에는 67억원으로 전망됨
 - 동 특례의 대부분은 법인세 감면에서 발생하고 있음

[표 2]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액: 2021~2026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p
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	29	36	36	39	52	67
－ 법인세	29	35	35	39	52	66
－ 소득세	0.2	1	0.02	0	0	0.5

주: p는 전망치임
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 방법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세목별 감면액 추이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정
 - 법인세 감면 실적은 2022~2026년 연평균 17.2% 증가하였으며, 향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
 - 소득세 감면 실적은 2026년 전망치 0.5억원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8년 78억원, 2032년 146억원 5년간 총 547억원(연평균 10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·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5년 연장(안 제67조)	-78	-91	-107	-125	-146	-547	-109
－ 법인세	-77	-91	-106	-124	-146	-544	-109
－ 소득세	-0.5	-0.5	-0.5	-0.5	-0.5	-2.5	-0.5

나.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 면제(안 제111조제1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전력 공급이 취약한 도서지역에서 생활·어업용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를 면제 면제
-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제는 동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

- (감면실적) 동 특례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실적은 2021년 15억원, 2024년 11억원, 2026년 13억원 등 다소 불규칙한 모습

[표 4]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액: 2021~2026년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p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	19	14	15	16	20	19
－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13	8	9	10	13	11
－ 교육세	2	1	1	1	2	2
－ 부가가치세 (제111조 제1항 제2호)	4	5	5	5	5	6

주: p는 전망치임
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 방법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감면액 추이가 불규칙하므로 최근 5년의 감면실적 평균이 향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세수효과를 추정
- 2022~2026년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감면액 평균: 10.2억원
 - 2022~2026년 교육세 감면액 평균: 1.4억원

(3) 추계결과

-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)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교육세는 2027년 11.6억원 등 5년간 총 58억원(연평균 11.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교통·에너지·환경세·교육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등 감면 5년 연장(안 제111조제1항)	-11.6	-11.6	-11.6	-11.6	-11.6	-58.0	-11.6
－ 교통·에너지·환경세	-10.2	-10.2	-10.2	-10.2	-10.2	-51.0	-10.2
－ 교육세	-1.4	-1.4	-1.4	-1.4	-1.4	-7.0	-1.4

다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(안 제121조의25제7항·제8항)

(1) 제도 개요 및 감면실적

- (제도개요)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
 - 대상: 명칭사용용역(제7항), 전산용역(제8항)
 - 현행 적용기한: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

- (감면실적) 동 특례의 조세지출액(부가가치세)은 2021년 50억원에서 2025년 81억원, 2026년에는 101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

[표 6]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과세특례 조세지출액: 2021~2026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2026p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	50	61	72	69	81	101

주: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 실적이며, p는 전망치임
 자료: 대한민국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.

(2) 추계 방법

- 조세지출예산서상 최근 감면액 추이를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정
 - 부가가치세 감면 실적은 2022~2026년 연평균 13.4% 증가했으며, 향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가정

(3) 추계결과

-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, 부가가치세는 2027년 115억원, 2031년 190억원 등 5년간 총 749억원(연평균 150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칭사용용역·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5년 연장 (안 제121조의25제7항·제8항)	-115	-130	-147	-167	-190	-749	-150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